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 50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5.26(화)

## 공 고

○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공고.....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공고 제2015-681호

「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5월 2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1. 개정이유

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 확대 및 조문 규정 구체화(안 제7조)
- 나.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(안 별표5)
  - 부과기준을 ‘매’ 에서 ‘시간’ 으로 변경
  -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,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,000원 부과
- 다.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(안 별표5)
  - 부과기준을 ‘매’ 에서 ‘MB(메가바이트)’ 로 변경
  - 1MB 이하는 무료,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
- 라.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,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(안 별표5)
- 마. 기타(안 별표5)
  -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, 그 비용을 수

수료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

-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재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 제출 사항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590-701

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) 남원시청 재정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10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(☎063-620-63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  
 제출자 : 남원시장  
 제안설명자 : 재정과장

## 1. 개정이유

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 확대 및 조문 규정 구체화(안 제7조)
- 나.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(안 별표5)
  - 부과기준을 ‘매’에서 ‘시간’으로 변경
  -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,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,000원 부과
- 다.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(안 별표5)
  - 부과기준을 ‘매’에서 ‘MB(메가바이트)’로 변경
  - 1MB 이하는 무료,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
- 라.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,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(안 별표5)
- 마. 기타(안 별표5)
  -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,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
  -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(수수료의 금액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5. 26. ~ 2015. 6. 15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”를 “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, 인가·허가 그밖에 신고,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, 지정, 확인 등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과 인가·허가 그밖에 신고,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, 지정, 확인, 행정정보공개 등(이하 “각종 증명 등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요율)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.

제4조 제1항 본문 중 “제3조”를 “제3조의”로,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 등”으로, “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(수리)”를 “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

등을 발급(접수 처리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본직”을 “등록기준지”로,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인”을 “여러 사람”으로, “공부”를 “공적 장부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 등”으로, “수 건의 제증명등을”을 “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수수료는 「남원시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·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전단 중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”을 “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”으로, “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증명에 대하여는”을 “증명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 
 각종 증명 등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기타 제증명”을 “각종 증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한한다)”를 “한정한다)”로,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 증명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등록된”을 “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”로, “제증명등”을 “각종

증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한한다)”를 “한정한다)”로, “제증명”을 “각종 증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제증명”을 “각종 증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「5.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, “제증명”을 “각종 증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를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로, “자가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”을 “사람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각종 증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을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.

10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

11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

제7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비영리 학술·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
제7조 제2항 제2호 중 “청구한 때”를 “청구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

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.

제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을”을 “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한다.

② 「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한다.

③ 「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한다.

④ 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한다.

[별표 5]

## 행정정보공개수수료 (제3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 사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1시간 이내: 무료</li> <li>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3 이상 30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100원</li> <li>- B4 이하 25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50원</li> </ul> </li> </ul>
필름· 테이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</li> </ul> </li> <li>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</li> </ul> </li> <li>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영화필름의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</li> </ul> </li> <li>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진필름의 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장: 20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5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개마다 5,000원</li> </ul> </li> <li>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건마다 3,000원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 </li> <li>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롤마다 5,000원</li> </ul> </li> <li>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편마다 3,000원</li> </ul> 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진필름의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컷마다 6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진필름의 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컷마다 50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"×5" 200원</li> <li>5"×7" 300원</li> <li>8"×10" 400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마이크로필름 ·슬라이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</li> <li>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슬라이드의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컷마다 20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종이출력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3 이상 30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200원</li> <li>- B4 이하 250원</li> <li>· 1장 초과마다 150원</li> </ul> </li> <li>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롤마다 1,000원</li> </ul> </li> </ul>

		※ 매체비용은 별도  ○ 슬라이드의 복제 - 1컷마다 3,000원 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※ 매체비용은 별도 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 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고 >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[별표 6]

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(제7조 관련)

<고무인 규격>

위 증명은 「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.

○ 가로 8cm, 세로 2.5cm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·허가 기타 신고,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, 행정정보공개 등(이하 “제증명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)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.</p> <p>제3조(요율)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같다.</p> <p>제4조(기준)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(제</p>	<p><u>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, 인가·허가 그밖에 신고,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, 지정, 확인 등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) 각종 증명과 인가·허가 그밖에 신고,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, 지정, 확인, 행정정보공개 등(이하 “각종 증명 등”이라 한다)의----- -따라 ----.</p> <p>제3조(요율)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.</p> <p>제4조(기준) ① 제3조의----- ---<u>각종 증명 등</u>----- -----</p>

출)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(수리, 등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 다만, 본 적,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.

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.

제5조(징수방법) ① 수수료는 납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. 다만,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 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.

-----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(접수 처리--  
-. -----  
1명-----  
----. -----등록기준지-----  
-----  
-----각종 증명 등-----.

② 여러 사람-----공적 장부-----  
--1명-----  
-----.

③ -----각종 증명 등-----  
-----  
-----  
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-----  
-----  
-----  
-.

제5조(징수방법) ① 수수료는 「납원시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.

②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·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조(수수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·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행정정보공개,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제증명등
2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, 신청,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수수료의 반환) -----  
-----각종 증명 등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경우에는  
-----  
-----증명은-----  
-----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
2. -----  
-----따  
라-----  
각종 증명
3. -----

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

-----  
-----  
-----한  
정한다)-----  
-----각종 증명 등

4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

4.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각종 증명 등
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

5.-----  
-----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-----  
-----각종 증명 등
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

6.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한정한다)-----  
-----각종 증명

7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
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-----  
-----사람이-----  
-----각종 증명

8. 「5.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

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

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  
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 
둔 자가 신청·등록하는 제증  
명 등

9. 「특수입무수행자 지원 및  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 
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  
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 
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

10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  
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
하고 있는 경우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
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.

1. 비영리 학술·공익단체 또는  
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  
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  
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

2.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  
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  
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

한 법률」 제7조-----  
-----  
-----각종 증명

9. 「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  
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--  
-----  
-----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 
·등록하는 각종 증명

10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 
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  
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 
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 
각종 증명 등

11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  
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
하고 있는 경우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비영리 학술·공익단체 또는  
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  
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 
정보를 청구한 경우

2. -----  
-----  
-----청

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
3.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<신 설>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구한 경우

3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-----  
필요한 사항은-----  
-----.

**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**

**비용추계 대상 여부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 1호에 해당되어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**제3조(작성대상)**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**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(안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#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